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27
----------	-------

발의연월일 : 2026. 6. 23.

발 의 자 : 서천호 · 조인철 · 임종득  
조지연 · 엄태영 · 김선교  
김장겸 · 강명구 · 박덕흠  
김재섭 · 안철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의무 대상이 반려견에 한정되어 있어 반려묘는 전국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등록 방식으로 내장형(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목걸이) 방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외장형 등록 방식의 경우 탈락·제거가 용이함에 따라 유기·유실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유자 주소 변경 등 등록동물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 갱신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정보의 최신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동물의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를 갱신하여야 할 사유를 법률에 명

시함으로써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등).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인정하여”를 “인정하는 개, 고양이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등록대상동물을”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

다.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라.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마.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 바. 등록동물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사.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아.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자.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 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 설>

<신 설>

<신 설>

-----  
-----  
-----.

② -----  
-----  
-----  
-----  
-----  
-----  
-----.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

다.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⑦ (생 략)

라.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마.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바. 등록동물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사.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아.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자.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 ⑦ (현행과 같음)